

**특 정 감 사**  
2015. 4. 13. ~ 4. 24.

---

## **감사결과 처분요구서**(공개용)

---

일련번호	#	감 사 자	○○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 정 상 조치방법	추징	재 정 상 조치금액	#,###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구 ○○과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 감사담당관실

### 시 정 요 구

제 목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구 ○○과

내 용

- ◆ ○구 ○○과와 ○구 ○○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5조,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규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 ○○과와 ○구 ○○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표1]과 같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하여야 했었다.

[표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자료 추징누락 현황

(단위 : 건, 원)

구분	건수	합계	취득세	가산세	비고
합계	#	#,###,###	#,###,###	#,###,###	
남구	#	#,###,###	#,###,###	###,###	이전 #, 분리 #
북구	#	#,###,###	#,###,###	#,###,###	이전 #, 분리 #

※ 세부내역 별첨

## 조치할 사항

- ① ○구 ○○과장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구 ○○과장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 사 자	○○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 정 상 조치방법	추징	재 정 상 조치금액	##,###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구 ○○○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 감사담당관실

### 시 정 요 구

제 목 농지 등에 대한 감면자료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구 ○○과

내 용

- ◆ ○구 ○○과와 ○구 ○○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5조,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 제2조 별표 1에 따라 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등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시설,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 및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 ○○과와 ○구 ○○과에서는 경작 및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귀농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표1]과 같이 추징하여야 했었다.

<표1> 농지, 농업시설, 귀농인 감면자료 추징누락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합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 계	##	##,###,###	#,###,###	###,###	###,###	
남 구	#	#,###,###	#,###,###	###,###	###,###	
북 구	#	#,###,###	#,###,###	###,###	###,###	

※ 세부내역 별첨

## 조치할 사항

- ① ○구 ○○과장은 농지의 매각, 다른 용도 사용 등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 ○○과장은 농지의 매각, 다른 용도 사용 등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 제20조, 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 사 자	○○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 정 상 조치방법	추징	재 정 상 조치금액	##,###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구 ○○○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 감사담당관실

### 시 정 요 구

제 목 기계장비(지게차) 취득세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남·북구 ○○○

내 용

- ◆ ○구 ○○과와 ○구 ○○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5조,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 제2조 별표 1에 따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고, 법 제7조에서는 기계장비(지게차)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 ○○과와 ○구 ○○과에서는 [표1]과 같이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지게차) 등을 취득한 납세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했었다.

<표1> 기계장비(지게차) 취득세 과세누락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합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비 고
합 계	##	##,###,###	##,###,###	#,###,###	#,###,###	
남 구	##	#,###,###	#,###,###	###,###	#,###,###	
북 구	##	##,###,###	#,###,###	###,###	#,###,###	

※ 세부내역 별첨

### 조치할 사항

- ① ○구 ○○과장은 기계장비(지게차)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 외 ##명(법인) 등에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구 ○○과장은 기계장비(지게차)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 외 ##명(법인) 등에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 사 자	○○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 정 상 조치방법	추징	재 정 상 조치금액	#,###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구 ○○과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 감사담당관실

### 시 정 요 구

제 목 주민세(재산분)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구 ○○과

내 용

- ◆ ○구 ○○과와 ○구 ○○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5조,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4조 규정을 살펴보면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하고,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고,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로 정의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75조 제2항, 제80조 내지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서는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이며,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에 1제곱미터당 250원을 산출한 세액을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세법」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서는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 ○○과와 ○구 ○○과에서는 [표1]과 같이 주민세(재산분)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주민세(재산분)를 징수하여야 하였다.

<표1> 주민세 재산분 과세누락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합 계	본 세	가산세	비 고
합 계	##	#,###,###	#,###,###	#,###,###	
남 구	#	#,###,###	#,###,###	###,###	
북 구	##	#,###,###	#,###,###	#,###,###	

※ 세부내역 별첨

### 조치할 사항 남구 세무과장은

- ① ○구 ○○과장은 주민세(재산분)을 과세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 제84조의6 규정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② ○구 ○○과장은 주민세(재산분)을 과세하지 않은 ○○○ 외 #명 등에 「지방세법」 제84조의6 규정에 따라 주민세(재산분)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 사 자	○○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 정 상 조치방법	추징	재 정 상 조치금액	###,###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구 ○○과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 감사담당관실

### 시 정 요 구

제 목 학교 등에 대한 감면자료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구 ○○과

내 용

- ◆ ○구 ○○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5조,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규정에 의하면 학교 등이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 등이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 ○○과에서는 [표1]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했으며,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했었다.

[표1] 학교 등 추징·과세누락 현황

○ 납세자 인적사항

납세자		과세물건지	취득일자
성명	등록번호		
(학)○○○○○○○○	#####-#####	○구 ○동 ###-###	####.##.##

○ 취득세 추징누락 사항

(단위 : 원)

합 계	취 득 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 산 세
###,###,###	###,###,###	##,###,###	##,###,###	##,###,###

○ 재산세 과세누락 사항

(단위 : 원)

연도	합 계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 계	###,###,###	##,###,###	##,###,###	##,###,###
2012년	##,###,###	##,###,###	#,###,###	#,###,###
2013년	##,###,###	##,###,###	#,###,###	#,###,###
2014년	##,###,###	##,###,###	#,###,###	#,###,###

**조치할 사항**    ○구 ○○과장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제된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학)○○○○○○○○에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고

② 과세기준일 현재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여 재산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학)○○○○○○○○에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 사 자	○○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 정 상 조치방법	추징	재 정 상 조치금액	###,###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구 ○○과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 감사담당관실

### 시 정 요 구

제 목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구 ○○과

내 용

- ◆ ○구 ○○과와 ○구 ○○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5조,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 제2조 별표 1에 따라 취득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sup>1)</sup> 규정에 의하면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 ○○과와 ○구 ○○과에서는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표1]과 같이 추징하여야 했다.

<표1>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자료 취득세 추징누락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합 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가산세
합 계	##	###,###,###	###,###,###	##,###,###	##,###,###	##,###,###
남 구	#	###,###,###	###,###,###	#,###,###	###,###	##,###,###
북 구	#	###,###,###	###,###,###	##,###,###	##,###,###	##,###,###

※ 세부내역 별첨

## 조치할 사항

- ① ○구 ○○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후 면제 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주)○○○○ 외 #개 기업 등에 「지방세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규정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규정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 ○○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한 후 면제 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주)○○○ 외 #개 기업 등에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 사 자	○○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 정 상 조치방법	추징	재 정 상 조치금액	###,###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구 ○○과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 감사담당관실

### 시 정 요 구

제 목 종교단체 감면자료에 대한 과세누락에 관한 사항

관계부서 ○·○구 ○○과

내 용

- ◆ ○구 ○○과와 ○구 ○○과에서는 「지방세기본법」 제6조, 「지방세법」 제105조,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포항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의 경우에는 6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3항에서는 이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고,
- 「지방세법」 제21조 규정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교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 ○○과와 ○구 ○○과에서는 [표1]과 같이 종교단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여야 하였다.

[표1] 종교단체 감면자료에 대한 과세누락 현황

(단위 : 원)

구 분	건수	합 계	취 득 세	농 특 세	지방교육세	가 산 세
합 계	14	###,###,###	###,###,###	#,###,###	##,###,###	##,###,###
남 구	8	##,###,###	##,###,###	###,###	#,###,###	#,###,###
북 구	6	###,###,###	###,###,###	#,###,###	##,###,###	##,###,###

※ 세부내역 별첨

### 조치할 사항

- ① ○구 ○○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후 면제 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 외 #개 단체 등에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 ○○과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후 면제 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 외 #개 단체 등에 「지방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계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감 사 자	○○ #급 ○○○		공 개(○) 비 공 개( ) 부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	재 정 상 조치방법	추징	재 정 상 조치금액	##,###천원
수감부서 (처리할 부서)	○·○구 ○○과	처분 요구일자	####.##.##	회신기일	####.##.##

## 감사담당관실

### 시 정 요 구

제 목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소홀

관계부서 ○·○구 ○○○○과

내 용

- ◆ ○구 ○○○○과와 ○구 ○○○○과에서는 「도로법」 및 「포항시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 「도로법」 제72조 규정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구 ○○○○과와 ○구 ○○○○과에서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법」 제96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법 제114조(벌칙) 규정에 따른 행정상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었고, 법 제72조(변상금) 규정에 따라 [표1]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그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하였다.

<표1> 불법 도로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대상 현황

(단위 : 건, 원)

구 분	건수	합 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합 계	##	##,###,###	#,###,###	#,###,###	#,###,###	#,###,###
남 구	##	##,###,###	#,###,###	#,###,###	#,###,###	#,###,###
북 구	##	##,###,###	#,###,###	#,###,###	#,###,###	#,###,###

※ 세부내역 별첨

## 조치할 사항

① ○구 ○○○○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 외 12명(법인) 등에 「도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건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구 ○○○○과장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 외 ##명(법인) 등에 「도로법」 제72조 규정에 따라 변상금 ##건 ##,###,###원을 부과·징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